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48 발의연월일: 2020. 11. 4.

발 의 자:전주혜·한무경·김영식

신원식ㆍ이 용ㆍ김형동

배준영 · 김미애 · 이종성

유상범 • 윤두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3년 12월 31일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(2015헌가19, 2018. 4. 26. 결정)을함에 따라,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협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.

이에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).
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"(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)"를 "(세무대리업무 등록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):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
- 2.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):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

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"대하여는"을 "대해서는"으로, "제14조"를 "제14조(변호사는 준용대상에

서 제외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"공인회계사"로"를 ""공인회계사 사 또는 변호사"로"로 한다.

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9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한"으로 한다.

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제82조제2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한"으로 한다.

②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9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
- 3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 록부에 등록한 변호사
-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 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
- 3.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 록부에 등록한 변호사
-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"를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"로 한다.

⑤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조제1항 중 "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"을 "「세무사법」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"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혀 형

제20조의2(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 대리) 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 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 개 정 안

- 제20조의2(세무대리업무 등록) ①
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 하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
 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다
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대
 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
 다.
 - 1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할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):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
 - 2.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(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증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):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

<신 설>

③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, 제4조, 제9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,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(같은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)및 제8장을 준용한다.이 경우해당조문중"세무사"는 "공인회계사"로, "한국세무사회"는 "한국공인회계사회"로, "제6조"는 "제20조의2제1항"으로 본다.

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 사가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 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. ----대해서는------제14조(변호사는 준용대상에 서 제외한다)---------"<u>공인회</u>계 사 또는 변호사"로-----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